

고 시 문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109호

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7조제3항에 따라 「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73호, 2023.2.10.)」을 다음과 같이 조정·고시합니다.

2023년 3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

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층수별, 면적별 지상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 : 천원/m²)

	구 분 (주거전용면적기준)	지상층건축비 (주택공급면적기준)
5층 이하	40m ² 이하	1,962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073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002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1,914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1,958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1,943
	125m ² 초과	1,914

6~10층 이하	40m ² 이하	2,099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218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142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2,048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095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079
	125m ² 초과	2,048
11~15층 이하	40m ² 이하	1,970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082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010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1,922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1,966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1,951
	125m ² 초과	1,922
16~25층 이하	40m ² 이하	1,992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104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032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1,943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1,988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1,972
	125m ² 초과	1,943
26~30층 이하	40m ² 이하	2,023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138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065
	60m ² 초과 ~ 85m ² 이하	1,974
	85m ² 초과 ~ 105m ² 이하	2,019
	105m ² 초과 ~ 125m ² 이하	2,004
	125m ² 초과	1,974
31~35층 이하	40m ² 이하	2,055
	40m ² 초과 ~ 50m ² 이하	2,171
	50m ² 초과 ~ 60m ² 이하	2,097
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005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051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035
	125㎡ 초과	2,005
36~40층 이하	40㎡ 이하	2,087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205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130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036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083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067
	125㎡ 초과	2,036
41~45층 이하	40㎡ 이하	2,115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234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158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063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110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094
	125㎡ 초과	2,063
46~49층 이하	40㎡ 이하	2,181
	40㎡ 초과 ~ 50㎡ 이하	2,305
	50㎡ 초과 ~ 60㎡ 이하	2,226
	60㎡ 초과 ~ 85㎡ 이하	2,128
	85㎡ 초과 ~ 105㎡ 이하	2,177
	105㎡ 초과 ~ 125㎡ 이하	2,160
	125㎡ 초과	2,128

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면적별 지하층건축비는 다음과 같음

(단위: 천원/m²)

지하층건축비
(지하층면적기준)

933

※주거전용면적과 무관

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는 다음과 같음

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 : 1.1833

※ '20.3.1일 시행된 기본형건축비의 공동주택 건설공사비지수(=1)를 기준으로 산정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(「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)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